

#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##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미래를 경험하다!

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,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「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」의 참여기업 모집합니다.

2026년 6월 12일  
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

### 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(주관:행정안전부)
- 사업기간 : '2026. 6월 ~ 12월 ※일경험 기간 : 7월~11월(5개월)
- 사업내용 :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
- 사업대상
  - 고용 1인 이상 마을기업, 협동조합
  -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 등
- 지원내용
  - 참여 청년 인건비(월 209시간 개근 시 2,338,292원/주40시간 기준. 유급주휴 포함, 세전)
  - 4대보험료 기업부담금(11.47%)
  - 월 20만원(운영비, 1인당)
  - 월 15만원 지원(멘토수당 1인당)

## 2 모집개요

- 모집기간 : 2026. 6. 12.(금)~6. 18.(목)까지
- 모집규모 : 참여청년 134명,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
- 모집대상 (\*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 2026. 5. 31. 기준)
  - 고용 1인 이상 [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**마을기업**
  - 고용 1인 이상 [협동조합 기본법]에 따른 **협동조합**
  -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**비영리법인·단체** 등

- ◎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의 범위
  - 조례 등에 따라 **예비사회적기업, 예비마을기업**으로 지정받은 법인·단체
  -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(예:청년센터)
  -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(예:사회적경제연합회 등)
- ◎ 복수의 법적 지위·인증을 보유한 경우

구분	참여여부
마을기업이면서 (예비)사회적기업인 경우	가능
협동조합이면서 인증 사회적기업인 경우	불가
비영리법인·단체이면서 인증 사회적기업인 경우	불가

- 참여요건
  - 참여기업은 신청일 기준,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- ❶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
    - ❷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

- ◎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(현장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)
  -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  -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
  -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
  - 재무제표,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
  -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계의 경우 회의록,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

- ❸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이 확인될 것(\*사업결과보고서, 협약서, 공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등 제출)

- 참여기업 선정 후 개별연락

○ 참여제한

-참여기업의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

- ①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(급여, 수당 등)를 지원받고 있는 자  
※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
- ②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
- ③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
- ④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(체불사업주 명단 공개)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
- ⑤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(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)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
\* 공표일(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)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
- ⑥ 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·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 
\* '24년~'25년 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⑦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

### 3 신청개요

○ 신청유형

- ① **취업형** 인턴 :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,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
- ② **일자리창조형** 인턴 :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, 참여청년을 팀 단위(2~4명)로 기업과 매칭

- ◆ (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)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직무(직업)을 기획·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
- ◆ (창업지원 조직)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·컨설팅·교육·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(예: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, 창업보육센터, 창업지원단 등)
- ◆ (신규 직무)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·재설계하는 것

유형	기본 직무	(예시) 신규 직무
돌봄	요양, 방문서비스 제공	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등
주거	주거취약계층 지원, 친환경 도시 조성	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등
로컬푸드	도시락, 밀키등 제공	로컬푸드 식단 코디네이터 등

○ 제출서류

NO	제출 서류	서식	필수
1	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	서식1	필수 제출
2	참여기업 확인서	서식2	
3	참여기업 서약서	서식3	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서식4	
5	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		
6	법인등기부등본	발급 3개월 이내	
7	마을기업·협동조합 등 설립·지정 증빙서류		
8	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	회계(세무)사 확인자료 또는 홈텍스 발급분	
9	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*조회기간 2025.12.1.~2026.5.30.	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	
10	가점 증빙서류	(붙임1) 심사기준 참고	

## 4 선정절차 및 기준

○ 선정 절차

모집 공고	신청 접수	참여기업 선정	약정 체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기관 등)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모집</li> <li>▶ 청년 대상 사업 홍보 병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기업) 공고에 따라 운영기관 등에 신청서류 제출</li> <li>* 신청기업 제출서류 미비시 보완요구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기관 등) 참여기업 심사·평가 후 최종 선정 통보</li> <li>▶ 선정 공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지방정부·참여기업) 약정 체결</li> <li>▶ (기업) 약정 체결 후 참여 청년 면접 실시 및 선발</li> </ul>
6월	6월	7월	7월

○ 선정 기준

평가항목	세부 평가기준	배점										
참여기업 규모	<p>• 전년도 기준 매출액(15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5억원 이상</th> <th>2억원 이상 ~5억원 미만</th> <th>1억원 이상 ~2억원 미만</th> <th>5천만원 이상 ~1억원 미만</th> <th>5천만원 미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5</td> <td>12</td> <td>9</td> <td>6</td> <td>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5억원 이상	2억원 이상 ~5억원 미만	1억원 이상 ~2억원 미만	5천만원 이상 ~1억원 미만	5천만원 미만	15	12	9	6	3	25
	5억원 이상	2억원 이상 ~5억원 미만	1억원 이상 ~2억원 미만	5천만원 이상 ~1억원 미만	5천만원 미만							
15	12	9	6	3								
<p>※ 매출액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재무제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                    ※ 비영리법인·단체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근년도 결산서, 고유목적사업 실적, 세입·세출 내역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음</p>												

평가항목	세부 평가기준	배점																		
	<p>• <b>상시고용인원(10점)</b> ※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</p> <p>- 마을기업, 협동조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6 459 1302 600"> <tr> <td>10인 이상</td> <td>7인 이상 ~10인 미만</td> <td>5인 이상 ~7인 미만</td> <td>3인 이상 ~5인 미만</td> <td>1인 이상 ~3인 미만</td> </tr> <tr> <td>10</td> <td>8</td> <td>6</td> <td>4</td> <td>2</td> </tr> </table> <p>- 비영리법인·단체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6 689 1302 831"> <tr> <td>7인 이상 ~10인 미만</td> <td>5인 이상 ~7인 미만</td> <td>3인 이상 ~5인 미만</td> <td>1인 이상 ~3인 미만</td> </tr> <tr> <td>10</td> <td>7</td> <td>5</td> <td>3</td> </tr> </table>	10인 이상	7인 이상 ~10인 미만	5인 이상 ~7인 미만	3인 이상 ~5인 미만	1인 이상 ~3인 미만	10	8	6	4	2	7인 이상 ~10인 미만	5인 이상 ~7인 미만	3인 이상 ~5인 미만	1인 이상 ~3인 미만	10	7	5	3	
10인 이상	7인 이상 ~10인 미만	5인 이상 ~7인 미만	3인 이상 ~5인 미만	1인 이상 ~3인 미만																
10	8	6	4	2																
7인 이상 ~10인 미만	5인 이상 ~7인 미만	3인 이상 ~5인 미만	1인 이상 ~3인 미만																	
10	7	5	3																	
<p><b>직무설계 적정성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?</li> <li>• 참여청년이 수행하기 적절한 난이도인가?</li> <li>• 단순·반복 업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?</li> <li>• (일자리창조형)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, 실행 가능성</li> </ul>	25																		
<p><b>지원 및 관리체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?</li> <li>• 선임기준에 맞는 멘토가 지정되었는가?</li> <li>•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가?</li> <li>•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(공간·장비 등)가 확보되어 있는가?</li> </ul>	25																		
<p><b>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직무 수행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는가?</li> <li>•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과 연계 가능한가?</li> <li>•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과 연계되는가?</li> </ul>	25																		
<p><b>가점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(5점)</li> <li>•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(5점)</li> </ul>	10																		

## 5 지원개요

### ○ 지원금 지급 절차

참여기업→참여청년·참여멘토	참여기업→운영기관	운영기관→참여기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(참여청년) 본인계좌로 인건비 지급</li> <li>▶4대 보험료 납부</li> <li>▶(멘토수당) 참여멘토 계좌로 멘토수당 지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(참여기업) 증빙자료 제출</li> <li>*지원금 신청서, 출석부, 급여명세서, 이체확인증, 멘토 면담일지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</li> </ul>
급여지급일	익월 5일 이내	익월 20일 이내

### ○ 지원금 내용

항목	지원금액	지급방법
인건비	주 40시간 기준, 임금 2,338,292원 (시급 11,188원, 유급주휴 포함, 세전)	참여기업 법인계좌
운영비	1인당 최대 월 20만원	
멘토수당	1인당 최대 월 15만원	
4대 보험료	기업부담분	

### ○ 지원 일반사항

-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인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은 참여기업 자부담(연차수당 등)

-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참여기업에 차등지급

\*출석률: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(공가는 출석으로 인정)

-일자리창조형 인턴 : 참여기업에 지급되는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

### <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>

출석률	지급액(참여청년 1인당/월)	
	지원금액	멘토수당
90% 이상 출석	20만원	15만원
70% 이상 ~ 90% 미만 출석		13만원
60% 이상 ~ 70% 미만 출석	16만원	10만원
50% 이상 ~ 60% 미만 출석		9만원
40% 이상 ~ 50% 미만 출석	12만원	7만원
20% 이상 ~ 40% 미만 출석		6만원
20% 미만 출석	미지급	미지급

## 6 일반사항

### □ 참여청년 관리사항

#### 참여청년 자격조건

- (연령) 2026.1.1.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(1986.1.2.~2007.1.1. 출생자)
- (고용) 참여 신청일 기준, 미취업자(4대보험 미가입자)
- (지역)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충청남도 거주자
- (참여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
  -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
  - ※ 단,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참여 가능(증빙제출 필요)
  - ※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사실증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, 소득금액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,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
  - ②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
  - ③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
  - ④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(대표자)인 자
  -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
  - ⑥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
  -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
#### ○ (참여청년 근로계약)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

- 계약조건: 주 5일(주 40시간), 1일 8시간(09:00~18:00), 휴게시간 1시간(12:00~13:00) 별도, 4대보험 의무가입
- 연장근로 : 주 12시간 이내(참여청년 합의 필요)
- 근무내용 : 운영기관에 제출·승인받은 '참여기업 운영계획서'에 따른 업무(근로계약 변경 시 운영기관에 사전 승인 필수)
- 근태관리 : 자체시스템(전산, 수기 출석부 등)을 통해 참여청년 근태현황 관리

#### ○ 일경험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**전담인력 지정**

- (역할) 참여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, 운영기관에 대한 보고 등 일경험 운영 전반에 협조
- 전담인력이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멘토 검직

#### ○ (멘토링 프로그램 운영) : (멘토선정)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,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소속의 참여멘토를 지정

- (멘토자격)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멘토링이 가능한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
- (멘토링 운영) 참여멘토는 참여청년에게 주 1회 멘토링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

### □ 참여청년 수료사항

#### ○ (직무교육 참여) 총 20시간(1일 최대 8시간) 필수 참여

- 교육내용 :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직무 기초역량 강화, 참여청년 직무 분야별 실무교육 및 진로 연계
- 교육방법 : 온·오프라인 교육 등

-수료기준 : 교육시간의 90% 이상 출석

- (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참여) 주 1회 이상 청년매니저와 정기면담(대면·유선·온라인 등) 필수 참여
- (수료기준)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의 90% 이상 출근(출석)  
\*고용24를 통해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 발급 가능

#### □ 사업 운영관리

- (모니터링)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
  - 참여청년 고충, 민원 등 특이사항 관리 및 기타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적극 협조
  -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
  -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,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1년간 재참여 제한
- (시정지시)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, 시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,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 조치 할 수 있음

#### □ 유의사항

-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선정 취소, 지원 중단,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## 6 서류접수 및 문의

#### □ 북부권 [천안, 아산, 서산, 당진, 예산, 태안 지역]

- 서류 이메일 접수 : [asanymca2026@naver.com](mailto:asanymca2026@naver.com)
- 문의 **아산YMCA** : 041-546-9877

#### □ 남부권 [공주, 보령, 논산, 계룡, 금산, 부여, 서천, 청양, 홍성 지역]

- 서류 이메일 접수 : [cncse2604@naver.com](mailto:cncse2604@naver.com)
- 문의 **(사)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** : 041-408-7000